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(전문개정 2020.2.2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신여자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학 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·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.

제2장 위원회의 운영 등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1. 동물실험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
2. 실험동물의 관리·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
3.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
4.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
5. 그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,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각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하며, 제1호 및 제3호 중 1명 이상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본 대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로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
2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
3.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

이 있는 자

4.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 대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연구윤리센터 직원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회의 등)

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1. 총장 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동물실험계획 심의시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)

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연구·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상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③ 연구책임자는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검토 등)

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

제8조(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)

- ① 본 대학교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 등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.
-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,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동물실험계획의 승인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매 학년도에 한번씩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동물실험계획의 제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동물실험계획 심의·승인 등)

-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 1. 동물실험의 필요성과 타당성
 2.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
 3.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
 4.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
 5.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
 6.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
 7.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
 8. 「동물보호법」 제24조의 준수 여부
 9.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준수 여부
 10.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
 11.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·평가하고,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,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.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- ③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결과 통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심의결과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발급한다.

제11조(동물실험 수행)

-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, 모든 동물실험은 본 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동물실험수행자는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승인후 점검 : Post-Approval Monitoring; PAM)

- ①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4장 동물실험시설의 점검

제13조(동물실험시설의 점검)

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4조(수당)

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인,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유지)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기록 보관 및 열람)

-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조치요구)

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(명칭변경)에 따른 일괄 개정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6.14.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7.12.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2.21.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>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는 직전 규정에 따른다.